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시기

임영 전

연령별 임영대상자 (상근예비역 임영대상자 포함)
- 임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임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20세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된 사람은 그 해)

※ 대학 등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해소된 후 신청 가능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수입 후

병역감면(상근예비역 포함) /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가족의 ①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간으로 편입

부양비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미혼의 형제자매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기준

구분	부양의무자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연령	19세~59세	18세 이하, 65세 이상 60세~64세

부양비 기준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연령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보는 사람

- 상근예비역(임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연기 후 처리)

연령과 관계없이 자활가능자로 보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4주 이상 임신부, 현역병 또는 대체복무요원(임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2025년 재산액 기준 : 9,595만원 이하

[재산액 기준 적용의 예외적 경우] * 중복지정 높은 가산비를 적용

가족의 구성	기준액	가산비율
·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12,474만원	30%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피부양자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약 전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14,393만원	50%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약 전 영유아 등만 있는 경우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약 전 영유아 등 이외의 전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19,190만원	100%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총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지정예인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2025년 월수입액 기준

가족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	956,805	1,573,063	2,010,141	2,459,109	2,843,277	3,225,922	3,595,371
30%7산	1,243,847	2,044,982	2,613,184	3,170,842	3,696,261	4,193,689	4,673,98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

- 수입액 기준에 30% 가산 적용하는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약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또는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조회·보안

유관기관 조회

(세무서, 은행 시·군·구청 등)

본인 보안

(미비서류 보완)

병역감면여부 심사

가결(전시근로면역)

부결(병역감면 비대상)

병역감면 신청서류 제출

- 제출기관: 거주지 지방병무(지)청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생계유지관리사유 병역감면원(자기진단)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관리사유 병역감면(구비서류 포함)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 ☞ 지방병무청에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이 상담
- ※ 복지서비스: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임대주택 등 지원
- ☞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

담당부서 처리기준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서울 지방 병 무 청	(02) 820-4663, 4666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 667-5316, 523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 607-6235~6
경인 지방 병 무 청	(031) 240-7319, 7391~2 수원, 성남, 안양, 이천, 화성, 광주, 군포, 인성, 오산, 용인, 여주, 명파, 의왕, 과천, 하남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 230-4234~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 250-4308, 4457
강원 지방 병 무 청	(033) 240-6238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 정선
충북 지방 병 무 청	(043) 270-1274
전북 지방 병 무 청	(063) 281-3297, 3258
경남 지방 병 무 청	(055) 279-9374
제주 지방 병 무 청	(064) 720-3286
인천 병 무 지 청	(032) 454-2297~8, 2317 인천, 부천, 시흥, 광명, 김포, 안산
경기 북부 병 무 지 청	(031) 870-0241, 0247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관할 제외
강원 영동 병 무 지 청	(033) 649-4257 강원지방병무청 관할 제외

병무민원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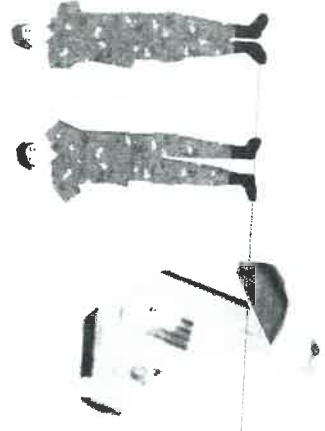
☎ 1588-9090 (국방국방)

2025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안내



평화적 사회를 향여가는 병무청



병무청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